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승강기산업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 및 시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승강기산업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 및 시상할 수 있다.

1.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·개발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자
 2.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,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
 3.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자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의 내용, 기준 및 방법·절차 등을 매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은 「정부 표창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